

# 경기심판위원회 규정

2015년 1월 14일 제 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요트협회(이하 “본 협회” 라 한다)정관 제9장33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을 경기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위원회는 본 협회 대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경기운영관, 심판, 임파이어, 계측관 이하 “경기심판” 이라 한다)의 양성 및 경기규칙과 경기운영의 발전을 위하여 요트경기에 필요한 경기심판의 안정적 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하여 모든 요트경기 진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이사회에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국제/국내대회 경기운영(플리트 / 매치레이스 / 팀레이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실행 방

안과 장, 단기 발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경기심판에 대한 교육 및 자격에 관한 사항(붙임1 경기심판 자격 참조)

3. 국내 경기심판 및 이벤트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이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해외 선진 경기심판 및 이벤트 기법의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승인대회의 TD, 경기심판 등 대회관련 임원, 위원 추천 및

국제대회, 관련회의, 세미나 등 추천에 관한 사항

6. 경기종목 선택 관한 사항

7. 경기운영, 계측 기구에 관한 사항

8. 경기규칙의 해석·적용·분쟁에 관한 유권해석 및 상고처리에 관한 사항

9. 클래스규칙의 정보수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10. 관련 요트의 안전도 검사 및 공인 인증에 관한 사항

11. 국내 개발 클래스규칙의 기초, 제안에 관한 사항

12. 전국/국제대회 유치신청 단체의 실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경기심판에 관련된 책자에 대한 번역 및 출판에 관한 사항

14. 각 소위원회의 심의된 내용에 대한 재심 및 승인

15. 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5인 이상 13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정관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2.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경기인(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본 협회 정관 및 규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회의 소집)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부 칙(2015. 0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 협회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심판위원회/경기위원회/계측위원회 규정은 폐지되며 이사회 의결로써 정한 이 규정이 대신한다.

제3조(경과 과정) 이 규정 제2장 3조 각 급수 별 인정은 2010년 06월 당시 1~2급 자격 취득자 중 현재까지 자격을 유지한 자와 그 이후 2014년까지 자격을 취득한 유지자는 2015년 보수교육을 통하여 2급을 인정하여 자격을 부활한다.

## 경기심판 자격기준

구분	심판 자격	경기운영관	계측관
<b>경기심판 자격 기준</b>			
<b>1. 구분</b>	① 국제심판: <b>IJ, IU</b> ② 국가심판: <b>1급, 2급, 3급</b>	① 국제경기운영관 : <b>IRO</b> ② 국가경기운영관 : <b>1급,2급,3급</b>	① 국제계측관 : <b>IM</b> ② 국가계측관 : <b>1급,2급,3급</b>
<b>2. 권 리</b>	① 대한요트협회 및 각 시·도협회, 클래스협회, 전국규모연맹체, 등록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요트경기의 해당 위원을 담당한다. ② 국제/국가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급수에 따라 숙식, 교통비 및 소정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③ 국제대회에 파견되거나 해당 국제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다. ④ 1급이상 자격취득자는 경기운영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 협회 승인대회의 감독관(TD)과 각종 세미나의 강사로 파견될 수 있다.		
<b>3. 의 무</b>	① 경기규칙을 준수하여 공명정대한 경기운영과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경기운영심판위원회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국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대회의 위원장은 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정된 양식으로 대회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한요트협회 경기운영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b>4. 응 시 자 격</b>	① 3급 응시자격은 각 호에 하나이상 해당되면 지원할 수 있다. 1. 3급 이상 세일링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 2. 2급 이상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 3. 3급 이상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 4.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경기경력 3년 이상인 자 5. 국가대표선수 및 상비군(후보)선수 경력에 있는 자 6. 경기지도경력이 2년 이상인자 7.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8. 대학에서 세일링을 전공하는 학생 중 KSAF 경기운영심판위원회의 심사/추천을 받은 자 9. 학교체육교사 및 교수로서 경기지도경력 2년 이상인 자 10. 본 협회 회원으로서 대한요트협회가 공인한 대회에 4회 이상 참가한 자 ② 공통자격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2급 이상의 자격보유 2. 대한요트협회 회원으로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b>5. 자 격 의 취 득</b>	① 3급 심판/경기운영관/계측관 응시자는 KSAF 회원으로 가입되고 경기운영심판위원회가 승인하고 KSAF 및 KSAF에 가입된 단체(시·도협회, 클래스협회, 전국규모연맹체, 등록단체 등)가 주최한 강습회를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되면 경기운영심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격을 부여한다. ② 2급 심판(엠파이어)/경기운영관/계측관은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안에 <b>GRADE 1</b> 이상 대회의 3회, <b>GRADE 2</b> 이상 대회의 3회 이상 참가한 자에 한하여 2급 심판(엠파이어)/경기운영관/계측 강습회를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경기운영심판위원회의 심사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2급 자격을 부여한다. ③ 1급 심판(엠파이어) )/경기운영관/계측관은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안에 <b>GRADE 1</b> 이상 대		

	<p>회의 4회, <b>GRADE 2</b> 이상 대회 2회 이상 참가한 자에 한하여 1급 심판(엠파이어)/경기운영관/계측 강습회를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경기운영심판위원회의 심사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1급 자격을 부여한다.</p> <p>④ ISAF 국제심판/경기운영관/계측관은 국가심판/경기운영관/계측관 1급 취득자 중 영어에 능통하고 ISAF 국제심판(IJ/IU), 국제경기운영관(IRO), 국제계측관(IM) 신청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KSAF 경기운영심판위원회의 심사/추천을 받아 ISAF에 신청 취득한다.</p> <p>⑤ ISAF 국제심판(IJ/IU), 국제경기운영관(IRO), 국제계측관(IM)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해당자격 1급으로 인정한다.</p> <p>⑥ ISAF 및 다른 국가에서 개최된 국제&amp;국가 심판/경기운영관/계측관 세미나참가 및 자격 취득은 KSAF 경기운영심판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자격을 부여한다.</p>
<p>6. 세미나</p>	<p>① 각급 별 심판/경기운영관/계측관 세미나는 KSAF 및 KSAF에 가입된 단체(시·도요트협회, 클래식협회, 전국규모연맹체, 등록단체 등)가 개최할 수 있으며 KSAF 경기운영심판위원회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KSAF는 강사를 파견한다.</p> <p>② 세미나의 교육시간은 총 16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p> <p>③ 심판자격 시험 통과 기준 : 총점 6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 최초 자격취득자나 등급을 올리는 자에 한함)</p> <p>④ 파견된 강사는 세미나를 마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KSAF 경기운영심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p> <p>⑤ 자격을 유지하는 자는 당해 연도 해당 세미나에 참가하여 수료 하여야 한다</p>
<p>7. 의 무</p>	<p>① 심판/경기운영관/계측관은 본 협회의 경기운영심판위원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승인대회의 각 위원장은 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정된 양식에 의거, 대회보고서를 작성하여 KSAF 경기운영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자격유효기간은 4년이다. 임명된 날로부터 4년 내에 승인대회의 심판/경기운영관/계측관은 <b>GRADE 1</b> 이상 대회 2회, <b>GRADE 2</b> 이상 대회 4회 이상 반드시 참가하고 유효기간이 끝나는 당 해 년도 10월 31일전에 해당 세미나에 참가하여 수료하고 KSAF 경기운영심판위원회에 재신청을 하여 재임명을 받아야 자격이 유지된다.</p> <p>③ 심판/경기운영관/계측관은 의무적으로 소집된 회의 또는 강습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p> <p>④ ②,③항의 대회참가의무 및 세미나참가 불이행, 부정행위시 자격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은 KSAF 경기운영심판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p> <p>⑤ 심판/경기운영관/계측관은 경기규칙을 절대로 준수하여야 하고 공명정대한 운영을 하여야 한다.</p>
<p>8. 사무관</p>	<p>① 사무관은 만 19세 이상인 자로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무관 또는 업저버를 활용할 수 있다.</p> <p>② 사무관은 경기수역에 나갈 수 있으나 표결이나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p>